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의 제12장(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~95조)을 삭제하고 「지방회계법」 제7장(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~제50조)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려 함.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및 용어 정비(안 제3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
 - 경리관 → 재무관, 채무관리관 → 부채관리관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7조제2항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

-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)
 - 전자이미지관인 → 전자이미지공인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회계법」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, 조례 관련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의 제12장(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~95조)이 삭제되고 「지방회계법」 제7장(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~제50조)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 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관련법령 정비
 - 조례의 관련 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 및 제91조가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하였고,
 -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
 -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정비하였고,
 - 안 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

-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

- 조례가 2018년 7월 6일 일부개정된 후 개정되지 않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.
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-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였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